

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6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제3항에 따라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의 위탁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에 관한 조항 신설(안 제4조의2)

나.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지방자치법」

2)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

3)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'16년도 예산에 5,000만원이 반영되었음.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”를 “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를 “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. 다만 위원의 자격, 추천 등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2조제2항 중 “각분야별”을 “각 분야별”로, “위원중에서”를 “위원 중에서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단서 중 “만료전이라”를 “만료 전이라”로 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위탁) ①시장은 지역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연구와 지역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등 정책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사 및 연구를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

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제1항 중 “1인과 서기 1인”을 “1명과 서기 1명”으로 한다.

제11조 중 “범위안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,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, 「구미시 재무회계 규칙」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</u>	<u>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</u>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발전에 관한 정책연구와 주요현안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수행의 효율성을 높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<u>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</u>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</u> ----- ----- -----.
제2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제2조(구성) ①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. 다만 위원의 자격, 추천 등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.
②위원은 시의원, 대학교수, 전문연구원, 기업지원관계자 등 <u>각분야별</u>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	②----- ----- <u>각 분야별</u> ----- -----

고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
중에서 호선한다.

③ (생 략)

제3조(위원의 임기) ①위원의 임
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
있다. 다만, 위원회의 운영에 있
어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
인정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
도 해촉할 수 있다.

② (생 략)

<신 설>

제10조(간사 등) ①위원회의 사무
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
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.

②·③ (생 략)

제11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하

----- 위원 중
에서 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3조(위원의 임기) ①-----

--. -----

----- 만료 전이라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조의2(위탁) ①시장은 지역발
전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연구와
지역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
해결방안 제시 등 정책연구의
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사
및 연구를 위원회에 위탁할 수
있다.

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
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
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
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간사 등) ①-----

---- 1명과 서기 1명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수당 등) -----

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
범위안에서 「구미시 각종위원
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정하는
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
를 지급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12조 (생 략)

범위에서-----

-----.

제12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
아니한 사항은 「구미시사무의
민 간 위 탁 촉 진 및 관 리 조 례」,
「구미시 재무회계 규칙」의 관
계규정을 준용한다.

제13조 (현행 제12조와 같음)

관 계 법 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□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

제11조(민간위탁의 기준)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정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

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,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□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정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
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소관 실·과		기획예산담당관실
입 안 자	과 장	김 용 학
	담 당	김 은 영
	담 당 자	정 상 진 (480-6528)